

第147回國會  
(閉會中)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第31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9年12月23日(土)

場所 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1面

(11時33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1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합니다.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朴昌熙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文東煥 지난 2月24日 第30次會議 이후, 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10個月餘만에 오늘 會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디있든간에 이제 8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이나마 5·18光州民主化運動의 眞相이 올바르게 평가되어서 이 나라의 歷史가 바로 기록되고 한맺힌 사람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1時36分)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委員會運營에 관한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本 特別委員會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特委는 政治的인 합의를 기다려 활동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이번 領袖會談에서 兩特委에서 前職 大統領의 證言을 듣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當 特委에서는 수차례 걸쳐 幹事會議를 열어 그에 대한 質疑書의 草案을 작성하고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委員會에서 명백하게 접수되어야 할 문제일 것으로 幹事會議에서는

판단해서 오늘 분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간의 상세한 내용은 各黨 幹事님들을 통해서 알려졌을 것으로 알고 그 협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金光一委員 4黨 合意事項內容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朴泰權委員 그리고 委員長님 말씀하시는 중에 質疑書라고 그러셨는데 書面訊問要旨 證人 訊問事項이라든지 이렇게 정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文東煥 예. 訊問要旨의 草案作成과 그 운영 방법에 대하여 협의 이렇게 訂正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前職 大統領 全斗煥 崔圭夏 兩 證人에 대한 訊問書採擇 聽聞會日程 場所 運營方法 등에 대해서 委員長과 幹事들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案件입니다.

그렇게 합의해서 여러분에게 이 案件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異議없으신지요?

○金泳鎭委員 일단 우리 特委가 幹事와 委員長에게 그 내용을 위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特委委員들의 의견개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補充質疑에 관한 문제입니다. 補充質疑를 지금 일부 言論에 거론되고 있는 것같이 書面으로 만일 대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 光州特委가 歷史의 眞實을 밝히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는 성의를 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마감하는 마당인데 書面質疑에 대한

答辯을 하고 그것도 聽聞會 방식이 아니고 나중에 補充質疑마저도 書面으로 해가지고 書面으로 받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歷史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마지막 매듭짓는 마당에 가서 이것은 흠이 생기게 됩니다.

이 흠이 생기게 되면 光州特委와 우리 國會만이 光州問題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國民이 보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그런 방식으로 된다면 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위임을 幹事와 委員長에게 해드리되 書面質疑에 대한 마지막 방법 補充質疑에 대한 방법은 적어도 확실하게 그것은 애기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거기에 대해서 제가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領袖會談에서 이 같은 質問方法 補充質疑에 관한 관계등 그리고 崔圭夏 前大統領에게 訊問하는 問題등등 절차 등은 重鎮會談에 일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重鎮會談에서 신중히 고려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서 일단 年內로 집행될 수 있는 全斗煥 前大統領에 대한 訊問書를 채택하고 날짜를 정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補充質疑에 관한 것은 重鎮會談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金泳鎮委員 本委員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열린 特委이고 과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우리 特委委員들이 의견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全體會談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요. 重鎮會談에서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을 해서 重鎮會談도 우리의 그런 뜻을 참고로 해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재 얘기되고 있는 대로 마지막 補充質疑에 관한 事項도 書面質疑로 한다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補充質疑에 관한 것은 보류하고 그 나머지 것만 일단 결의해서 .....

○金光一委員 金光一委員입니다. 光州特委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的으로는 이 特委의 專決事項입니다.

그리고 重鎮會議에 맡긴다하는 것은 政治的

인 이야기입니다. 重鎮회의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事項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합의할 事項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幹事한테 맡겨야 이러한 내용은 이리이러하게 되겠다 하는 예측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모든 문제를 앞으로 重鎮會談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重鎮會談의 내용에 따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委員長께서 重鎮會談에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일단 여기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事項은 어떡어떡하다 그러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幹事會議에 위임해달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밝히시는데 있어서 먼저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요.

우선 이 證人訊問이 年內에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 의하면 證人訊問은 證人の 利益을 위해서 證人出席要求書가 證人訊問期日 적어도 1週日 前에 送達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날짜로 봐서 今年 남아있는 날짜가 오늘을 빼고 꼭 1週日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날인 31日이 日曜日인 점을 감안할 때 30日에 이 證人訊問을 한다면 적어도 오늘 23日中으로는 送達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오늘중으로 送達問題가 해결돼야 된다는 점 하고요. 만약에 證人으로 나올 분하고 절충이 돼서 그러한 法的 制限期間을 둘 필요가 없다고 된다면 그 날짜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崔圭夏 前大統領에 관해서 訊問事項이 합의가 되었는지 崔圭夏 前大統領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짜에 訊問하기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委員長께서 알고 계시는 바를 묻고 싶고요.

적어도 證言 형식으로서 證人에게 訊問하는 法的 節次를 밟는 이상은 사전에 書面質問書가 주어지는 것은 答辯準備를 위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委員會 앞에서 證言을 하자면 당연히 訊問 즉 質問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答辯하는 형식이 취해져야 됩니다.

訊問할 내용은 사전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날 證人訊問의 절차는 우리 委員中에서 質問을 하고 證人이 答辯하는 형식을 취해야 適法하다 그리고 補充質問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 訊問要旨를 書面으로 요구한다면 미리 答辯要旨를 證人訊問期日 이전에 提出케 해서 補充質問의 요지까지를 미리 내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補充質問의 성격상 당연히 그것은 訊問當日에 口頭로 진행되어야 된다.

만약 그것까지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法律에 違反되기 때문에 證人으로서 訊問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答辯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이 會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李敏燮委員 말씀하시죠.

○李敏燮委員 李敏燮委員입니다.

방금 野黨의 두 委員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委員會 運營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말씀이고 또 좋은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具體的인 證言施行의 방법에 있어서 與野間에 異見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통을 겪고 있고 또 重鎭會談이나 總務會談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자리에서 委員會로서 결정할 수 있는 事項과 또 우리로서 결정하기가 벅차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5共特委와 連席會議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과도 절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윗선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방향을 정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黨幹事와 委員長한테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一任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光州特委에서 결정되고 議論되는 문제는 5共特委와 連席會議를 통해서 그 방향이 잡혀지고 結果的으로 證言聽取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野黨委員께서 이야기하는 補充質問의 方法을 놓고 지금 與野가 맞서 있습니다마는 그 절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黨에서 補充質問을 書面質問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유는 基本質問이 書面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 國會法에 보면 이러한 質問을 충분히 우리가 檢討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도 필요하다 해서 事前에 書面質疑要旨를 보내 주고 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그 뒤에 비로소 나와서 證言을 하도록 이렇게 法에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補充質問이라 하더라도 常任委員會에서 어떤 質問事項으로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補充質問이라면 증석에서 答辯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歷史를 照明하는 진실을 규명하고 그 發言 한마디 한마디가 이 政局에 미칠 크나큰 충격을 감안한다고 볼때 비록 補充質問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歷史앞에 책임을 지는 質問이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로서 이러한 성격의 補充質問을 常任委員會에서 가볍게 다루는 補充質問과 다르기 때문에 또 10年前的의 일을 우리가 묻는 사항이라면 그쪽에서 기억을 더듬고 주변의 關係人士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補充質問도 書面으로 하고 또 書面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意見を 開陳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金光一委員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의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래서 崔圭夏 前大統領問題만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난번 幹事會議에서 또 우리 全體議會에서 모두 委員長과 4黨幹事에게 委任되어 있는 事項입니다마는 오늘 全體會議가 오랫동안 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일일이 論議하다 보면 결론을 내기도 어렵고 설사 결론이 나오더라도 또 連席會議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再論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관계로 이것은 역시 이 자리에서는 모두를 委員長과 4黨幹事에게 委任을 해 주시고 다만 지금 委員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方法論上的 節次上的 문제는 幹事が 항상 창구를 열어놓고 또 5共特委에도 幹事가 있고 하니까 수시로 반영한다는 그런 조건으로써 오늘 이것을 委任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質問에 대해서 먼저 答辯을

하고 討議로 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趙贊衡委員 이것은 金光一委員 말씀과 관련된 法律上問題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趙贊衡委員 發言하세요.

○趙贊衡委員 金光一委員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7日前에 送達되어야 되고 送達의 節次와 方法은 民事訴訟法規定을 準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民事訴訟法規定은 郵便送達입니다. 直接送達이 없습니다. 郵便送達을 할 경우 최소한도 오늘 送達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年內 證人 訊問日字는 法律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證人 本人이 自進出頭 할 경우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自進出頭 한다는 것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限 지금 현재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과 民事訴訟法 규정에 의한 送達問題는 物理的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뜻에서 訊問日字를 정하시는데 있어서 年內 解決 訊問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李敏燮委員의 補充質問 문제에 관해서 제가 설왕설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基本質問은 書面으로 하면서 어떻게 補充質問은 ...

○委員長 文東煥 그것은 討議니까 조금 ...

○趙贊衡委員 말씀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基本質問에 대한 補充質問이기 때문에 그것은 口頭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答辯에 드릴테니까 먼저 質問에 대한 答辯 ...

○金仁坤委員 議事進行發言 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말씀하세요.

○金仁坤委員 지금 金光一委員이라든가 金泳鎭委員 또 李敏燮委員께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기 까닭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우리가 상당한 기간동안 口頭訊問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들 희망이었는데 그것 하나하나 가지고 여기서 따지게 되면 오늘 종일해도 이 문제가 결론이 못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幹事들을 지켜 보고 各黨의 重鎮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지금 上程된 本件 이것을 우선적으로 決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議事進行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서 제 얘기가 더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質問事項에 대해서 먼저 答辯하고 그리고 제가 제시한 案件을 다시 ...

○鄭昌和委員 答辯 그만두시고 ...

○金光一委員 아니 答辯하고 決議를 해야지요.

○委員長 文東煥 그러니까 質問에 대해서 答辯하겠단니까요.

總務會談에서 일단 이런 점이 決議됐습니다. 그것은 領袖會談에서 今年안에 된다고 했기 때문에 今年안에 되도록 집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히 모여서 前大統領에게 대한 訊問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절차는 그전에도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 特委에서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면은 오늘중으로 전달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總務會談에서도 저쪽의 편의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今年末前 31日前 저쪽에서 편리한 날짜를 선정하면 그것을 참작해서 여기에 聽聞會를 한다는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崔圭夏 前大統領에 관해서는 質問準備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領袖會談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것의 절차는 重鎮會談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로 이야기 하고 싶은 여러분의 논리는 여러분들의 院內總務들을 통해서 반영시켜서 집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에서 지금 決議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께서 ... 아까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幹事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전제하는 이 訊問書를 채택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 具體的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하는 것은 幹事님들에게 委任해서 補充質問에 관한 것도 幹事들은 總務團 重鎮會談의 결정을 참작해서 한다는 원칙이 서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委員長과 4黨幹事들에게 委任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案件이 없으면 이상으로써 오늘 會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散會)

○出席委員

文東煥	權海玉	辛卿植
沈明輔	李肯珪	李敏燮
鄭昌和	金泳鎭	辛基夏
李海瓚	趙淳昇	趙贊衡
金光一	朴泰權	吳景義
金仁坤	尹在基	

○出席專門委員立法審議官

專門委員	陳在勳
立法審議官	金永善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	趙洪奎	趙淳昇	平和民主黨

(2月28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	趙淳昇	趙洪奎	平和民主黨

(3月14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	趙洪奎	趙淳昇	平和民主黨

(7月19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	朴燦鍾	鄭夢準	어느交涉團體에도屬하지아니하는議員

(12月23日字)

○議案回附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案

(3月3日 金潤煥議員外 127人 發議)

3月6日字 回附됨

○請願回附

5·18光州民主化運動關聯解職公職者의原狀回復에관한請願

(5月8日 서울特別市麻浦區城山洞572-198 80.5.18光州民主化運動關聯解職公職者會 會長 주영길外 3人으로부터 申五澈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旨

1. 請願人들은 5·18光州民主化運動當時 光州直轄市에 公職者로 在職中 5·18光州民主化運動과 關聯되었다고 強制解職되었는바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案」에 포함시켜 全員 原狀回復하여 주기 바라는 內容임.

2. 請願人들은 80.5.18~9.30사이 光州直轄市에서 公職者로 在職中 光州民主化運動에 同調 協力하였다는 理由로 連行되어 精神的 肉體的 苦痛을 겪고 強制解職되었으나 當局에서는 80年 解職公職者들과는 달리 아무런 對策을 세우지 않고 있으므로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案」에 光州民主化運動과 關聯하여 解職된 者들도 포함시켜 全員 原狀回復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5月9日字 回附됨.